새싹어린이교통공원 교육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6월 12일
도시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2020 - 58

나. 제 출 자: 강서구청장

다. 제출일자: 2020년 6월 4일

라. 회부일자: 2020년 6월 8일

마. 상정일자: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 상정·의결(2020.6.12.)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교통행정과 조상연)

○ 새싹어린이교통공원 교육운영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0. 9. 1. 만료됨에 따라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여 어린이교통공원 교육운영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 새싹어린이교통공원 교육운영 민간위탁 재계약에 따른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새싹어린이교통공원 개요

○ 위　　치: 강서구 양천로14길 85(방화2동)

○ 면　　적: 야외교육장 2,255.2㎡(공원부지 4,939㎡)

○ 건 립 일: 2002. 9. 2.

○ 교육내용: 교통안전교육,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

○ 이용대상: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단체예약 이용)

○ 교육시설물 현황

교육시설 내역	비고
- 도로 및 신호등 12세트	- 횡단보도 12개, 보행신호등 9세트, 차량신호등 2세트(삼거리 1, 사거리 1)
- 교육안내판 10개	
- 골목세트 16m	
- 버스정류장 1세트	
- 교통안내표지판 12개	- 종합안내판 2, 자전거교육안내판 10

나. 위탁 내용

○ 위탁사무의 내용: 어린이교통공원 교육운영 및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 위탁기간: 3년(2020. 9. 2. ~ 2023. 9. 1.)

○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계약에 따른 새싹어린이교통공원 교육운영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선정

※ 수탁 예정기관: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표: 권도엽 외 3인)

다. 소요예산: 3,000만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조, 제6조~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7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안전 조례」 제8조

나. 기타사항: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이광희)

가. 제안이유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새싹어린이교통공원 교육 운영 사무의 위탁기간이 2020. 9. 1. 만료 예정임에 따라 현재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의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임

나. 민간위탁 재계약시 의회 동의

○ 새싹어린이교통공원은 강서구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현장 체험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의 교통 안전의식을 함양하고자 2002. 9. 2.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는 구청장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1]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

다. 현행 수탁자와의 민간위탁 재계약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서는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며

○ 이에 따라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는 최근 수탁기간 동안의 지도·점검·감사결과 및 종합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시 수탁기관 선정·적정성을 심사(2020. 5. 29.)한 결과 “적격”하다고 의결하였음

○ 새싹어린이공원은 공원 내 교통교육시설을 이용하여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법, 빈번하게 발생하는 10가지 교통사고 사례별 교육,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361개 단체 13,691명[2]의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1)「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무를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2) 연도별 교육현황

연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단체	361개	127	94개	140개
인원	13,691명	4,239명	4,695명	4,757명

○ 위탁사무가 민간위탁 사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교육 운영 및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는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이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르면 교육·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다년간 교육 운영 경험이 있는 민간의 전문 교육기법을 도입하는 것은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확산 및 교통사고 예방에 보다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6.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생략

8. 심사결과: 원안가결

붙임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 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무를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청소년·아동·가족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2. 노인·장애인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4. 교통, 주차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문화·예술·영상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6. 근로자복지, 자활, 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7. 교육·교양·체육·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8.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1년 단위 이하로 계약하는 연례 반복적 사무는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7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2.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1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을 같이 공개하여야 하며, 신청서와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선정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에서 제10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이 있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계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기간
3.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의 목적과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5. 수탁기관의 의무·준수사항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6. 계약 위반 시 책임
7.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의 위탁사실을 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재계약 절차) ① 구청장은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수탁기간 동안 구청장이 시행한 제22조의 지도, 점검, 감사에 따른 결과와 제25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등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회동의)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장 등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어린이ㆍ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장(이하"안전체험교육장"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단체 등이 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7조(민간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거나 실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ㆍ보조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안전 조례

제8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구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